

# 감정평가서

## APPRAISAL REPORT

건명	이소영 소유물건 (2025타경 12768)
의뢰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송성환
감정서번호	HC2025-0625-0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사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한국부동산감정평가사사무소



한국부동산감정평가사사무소  
Korea Real estate Appraiser office

#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김영환

김영환



감정평가액	오억칠천만원정 (₩570,000,000.-)		
-------	--------------------------	--	--

의뢰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송성환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7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이소영 (2025타경12768)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6.27	2025.06.25 ~ 2025.06.27	2025.06.27

감정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1세대  이	구분건물  하	1세대  여	-  백	570,000,000
합계					₩570,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 감정평가 개요

###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동에 소재한 지하철 우이신설선 “북한산우이역” 남동측 인근에 소재한 「나너올카운티」 제226동 제4층 제402호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부동산강제경매 (2025 타경 12768 소유자 : 이소영)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입니다.

### 2.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시장가치”란 감정평가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에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대하여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자발적이고 신중한 거래가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 3. 감정평가 기준 및 근거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관계법규와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근거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4. 기준시점

“기준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감정평가 조사를 완료한 일자인 2025년 06월 27일입니다.

### 5. 실지조사 ·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의 실지조사는 2025년 06월 25일에 실시하여 졌습니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6.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 ①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 ②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 {감정평가방식}

- ① 원가방식 : 원가법 또는 적산법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② 비교방식 :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③ 수익방식 :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업법인등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호의 감정평가방식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 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7.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

- 1) 본건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이 일괄하여 거래되는 구분건물이므로 본건의 감정 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의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제2항에 따라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식을 적용하되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즉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본건의 경우는 시장성이 높은 구분집합건물이므로 대상 물건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각각 산정하고 이를 합하여 산출하는 원가법이나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 하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제2항에 의거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의 합리성 검토는 생략 하였습니다.

### 8. 그 밖의 사항

- 1) 본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구분등기가 되어 있고 실제 구조도 독립된 부동산으로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구분 건물입니다.
- 2) 본건은 법원의 부동산 경매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담보, 소송등 감정평가 목적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3) 본건의 현장 조사시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들이 폐문 부재하여 부득이 내부 확인을 하지 못하여 표준적인 설비 및 이용상황, 집합건축물 평면도, 층별 배치도, 외부 관찰, 주변의 탐문조사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이용상태 및 내부 구조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경매 입찰시에는 재확인하시기 바라오며 평가시에 인용된 사례등은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인하여 일부 지번 또는 호, 수 등의 끝부분을 \*\*처리하였습니다
- 4) 본건은 구분건물므로 구분건물은 거래 관행상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분리하는 것이 곤란하나 감정평가의 목적상 부득이하게 건물과 토지의 대지권에 대한 가액의 배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이를 감안하여 위치, 건물의 구조, 층수, 내용년수 경과년수 등을 감안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적정하게 명세표에 표기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I. 대상물건 개요

소재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32-7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162가길 42-12)						
건물	건물명	나너울카운티 제226동					
	층수, 호수	제4층 제402호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5층					
	세대수	총 45세대					
	용도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공동주택가격 사용승인일	315,000,000 (2025.01.01.기준) 2020년 9월 23일					
실비구분	위생	급탕	난방	도시가스	승강기	소방	주차
	0	0	0	0	0	0	36대
기호 가	전용면적(㎡)	공용면적(㎡)		합계(㎡)	대지권면적(㎡)		
	59.98	12.11		72.09	60		

※ 자료/집합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관련 서류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Ⅲ.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액

###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 하였습니다.(거래사례비교법)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액 = 거래사례의 가격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가치형성요인비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 하는 경우 등 제7조 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 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2. 감정평가 자료

#### 1) 인근의 거래사례

【거래가격 단위 : 원】

기 호	소재지	전유 면적(㎡)	대지권 면적(㎡)	거래가격	전유면적당가 (원/㎡)	거래일자
						사용승인일
ㄱ	도봉구 쌍문동 533-4* 에다음 제30*동 제5층 제50*호	59.94	45.571	465,000,000	7,757,757	2024.09.10
						2017.05.12
ㄴ	도봉구 쌍문동 533-* 로템하이츠빌 제10*동 제4층 제40*호	52.56	40.7809	400,000,000	7,610,350	2025.04.07
						2017.08.30
ㄷ	도봉구 쌍문동 532-7* 외 나너올카운티 제22*동 제5층 제50*호	44.14	44	465,000,000	10,534,662	2024.03.13
						2020.09.23

▶ 자료출처(실거래) : 감정평가정보체계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2) 인근 유사부동산의 평가사례

기 호	소재지	전유면적 (㎡)	전유면적단가 (원/㎡)	평가금액 (원)	기준시점	평가 목적
a	도봉구 쌍문동 532-7* 외 나너울카운티 제23*동 제3층 제30*호	46.14	9,297,789	429,000,000	2024.07.01	법원 경매
b	도봉구 쌍문동 532-7* 외 나너울카운티 제23*동 제2층 제20*호	46.14	9,189,423	424,000,000	2025.02.05	법원 경매

▶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3) 인근의 가격 수준

주위 환경	용도	전유면적 기준 가격 수준 (원/㎡)
주변 다세대	주거용	8,000,000~10,000,000

### 4) 최근 경매 통계

용도별	서울시-도봉구 (최근 1년간)						
	구분	경매건수	낙찰건수	경낙율(%)	총감정가액(원)	총낙찰가액(원)	경낙가율(%)
연립 다세대		542	125	23.1	29,097,084,468	22,326,595,082	76.7

▶ 자료출처 : 지지옥션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3. 대상 물건의 표시 및 거래사례의 선정

#### 1) 감정평가 대상 물건의 표시

일련 번호	소재지	전유면적(m <sup>2</sup> )	대지권면적(m <sup>2</sup> )	사용승인일
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32-77 외 나너울카운티 제226동 제4층 제402호	59.98	60	2020.09.23

#### 2) 거래사례의 선정 기준

거래사례의 선정 기준은

- ① 거래사정이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
- ② 기준시점으로 시점수정이 가능한 사례
- ③ 대상 물건과 위치적 유사성이나 물적 유사성이 있어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입니다.

#### 3) 거래사례의 선정

인근 유사지역의 거래사례 중 본건 대상 물건의 인근에 소재하고 대상 물건과 위치적 유사성이 나 물적 유사성이 있어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하고 거래시점이 기준시점과 가까운 시점으로 시점수정이 가능하며 거래사정이 정상으로 인정되는 등 거래사례의 선정 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사례 “ㄱ” 을 비교사례로 선정 하였습니다.

기 호	소재지	전유 면적(m <sup>2</sup> )	대지권 면적(m <sup>2</sup> )	거래가격	전유면적단가 (원/m <sup>2</sup> )	거래일자 사용승인일
ㄱ	도봉구 쌍문동 533-4* 예다음 제30*동 제5층 제50*호	59.94	45.571	465,000,000	7,757,757	2024.09.10 2017.05.12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4. 사정보정

1) “사정보정”이란 거래사례에 특별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어떤 동기가 반영되어 있거나 거래 당사자가 인근 및 유사 부동산 시장에 정통하지 않아 적정한 거래사례가 되지 못한 경우에 이를 적절한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위 비교사례 물건은 인근지역의 가격수준을 참작할 때에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 됩니다. (1.000)

결정의견	사정보정치
거래사례의 사례가격은 인근지역의 가격수준을 참작할 때 정상적인 사례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000

### 5. 시점수정

“시점수정”이란 거래사례의 거래시점과 대상물건의 기준시점이 불일치하여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래사례의 가격을 대상물건의 기준시점의 가격수준으로 적정화 하는 것입니다.

시점수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 발표하는 주택가격지수를 활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지역: 서울시 강북지역-동북권

거래시점: 2024.09.10. (2024.08월 지수를 적용함): 99.1

기준시점: 2025.06.27. (2025.05월 지수를 적용함): 100.2

구분	매매가격지수(2025.03=100기준)		산정식	시점수정치
	거래시점(2024.09.10)	기준시점(2025.06.27)		
다세대 매매가격지수 (서울-강북-동북권)	99.1 (적용:2024년8월지수)	100.2 (적용:2025.05월지수)	100.2/99.1	1.0111
결정의견	대상은 위치, 평가목적, 부동산시장 동향등을 고려할 때 「다세대가격지수」가 대상 부동산의 시점수정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 자료 :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자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6. 가치형성요인의 비교

가치형성요인은 평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요인과 지역요인, 개별요인을 말하는 것으로 가치형성요인의 비교는 거래사례와 대상물건과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가치형성요인에 차이가 있을 때에 이를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개별화, 구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 1) 지역요인의 비교

거래사례와 대상물건은 동일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이 동일시 됩니다. (1.000)

### 2) 개별요인의 비교

#### ■ 개별요인 비교항목(주거용)

		개별요인의 비교 (주거용)	
구분	요인	항목	
세부항목	외부 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접근 및 편리성,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내부 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 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년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내 통로구조, (복도식, 계단식등)	
	호별 요인	층별효용, 향별효용, 위치별효용(동별,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등에 의한 소음 등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물건	거래사례	단지외부요인	단지내부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누계치
가	ㄱ	1.03	1.17	1.00	1.00	1.21
		거래사례 대비하여 외부요인(자연환경등)과 내부요인(구조 및 마감상태와 경과년수에 따른 노후도등)이 우세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7.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비준시산 단가 = 거래사례 가액 × 사정보정치 × 시점수정치 × 가치형성요인비교치

※ 시산 가액 = 비준시산가격 단가 × 대상물건의 면적

#### 1) 전유 면적의 시산가액(단가) 산출

일련 번호	대상 물건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시산단가(원)
가	도봉구 쌍문동 532-77 외 나너울카운티 제226동 제4층 제402호	7,757,757	1.00	1.0111	1.21	9,491,080

- 시산 단가 = 거래사례 가액 × 사정보정치 × 시점수정치 × 가치형성요인비교치

#### 2) 대상물건의 시산가액 산출

(비준가액: 천만원 미만 반올림)

일련 번호	대상 물건	전유면적 (㎡)	적용단가 (단가:원/㎡)	산정가액(원)	시산가액(원)
가	도봉구 쌍문동 532-77 외 나너울카운티 제226동 제4층 제402호	59.98	9,491,080	569,274,978	570,000,000

※ 시산가액 = 적용단가(원/㎡) × 전유 면적(㎡)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V. 감정평가액 및 결정 의견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시정보정,시점수정,가치형성요인 비교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결정하는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방법으로 본건의 경우에도 거래사례,감정물건의 사례,인근지역의 가격수준,기타 가격참고자료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감안하여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기호	층, 호수	감정평가액 (원)
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32-77 외 나너울카운티 제226동 제4층 제402호	570,000,000
	합계	570,000,000

#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62가길42-12	532-77 외	나너울 카운티 제226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	1층	12.02			
					2층~3층 각	109.55			
					4층	104.26			
					5층	79.59			
					옥탑(연면적제외)	4.8			
1	상동	532-77	대	제1종일반주거지역	916				
2	"	532-78	대	제1종일반주거지역	686				
가	"	"	제4층 제402호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소유권 1.2 ----- 대지권	59.98  60 1,620 × ----- 1,620	59.98  60	570,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포함:	
합 계				이 하	여	백	₩570,000,000.-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동에 소재한 지하철 우이신설선 "북한산우이역" 남동측 인근에 소재한 「나너울카운티」 제226동 제4층 제402호으로 주변은 대로 후면의 다세대주택지대로 주변은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입니다.

## (2) 교통상황

본건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며 북서측으로 지하철 우이신설선의 "북한산우이역"이 소재하며 제반 대중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의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사용승인일은 2020년 9월 23일입니다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타일 붙임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으로 마감함.

## (4) 이용상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5) 설비내역

위생, 급탕, 난방, 승강기, 도시가스, 소방 및 주차설비 등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는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의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북측으로 약 폭 6m의 도로와 접하고 단지내 도로를 통해 연결됩니다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쌍문동 532-77, 쌍문동 532-78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9) 공부와의 차이

해당 사항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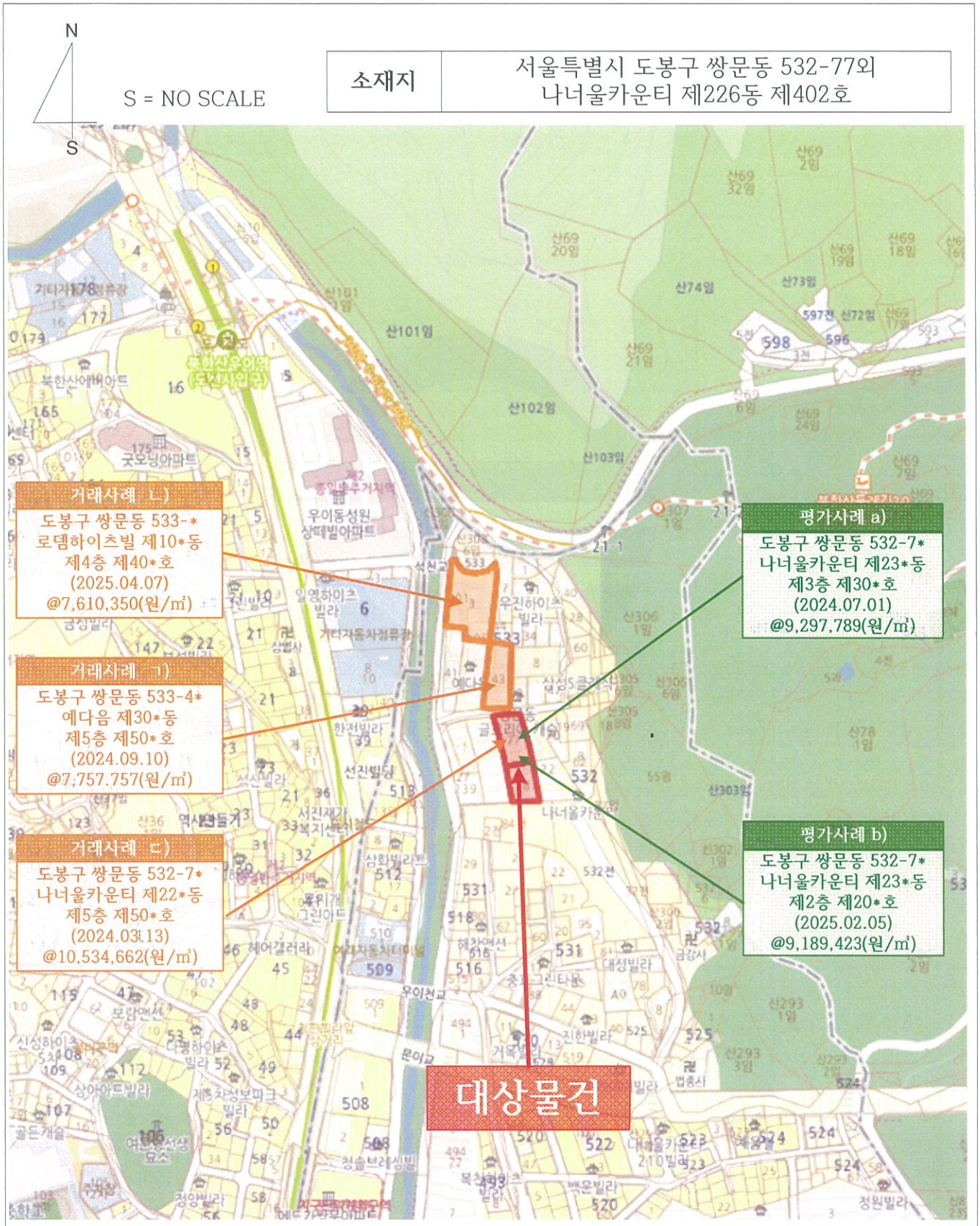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련: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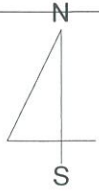
# 광역위치도



# 상세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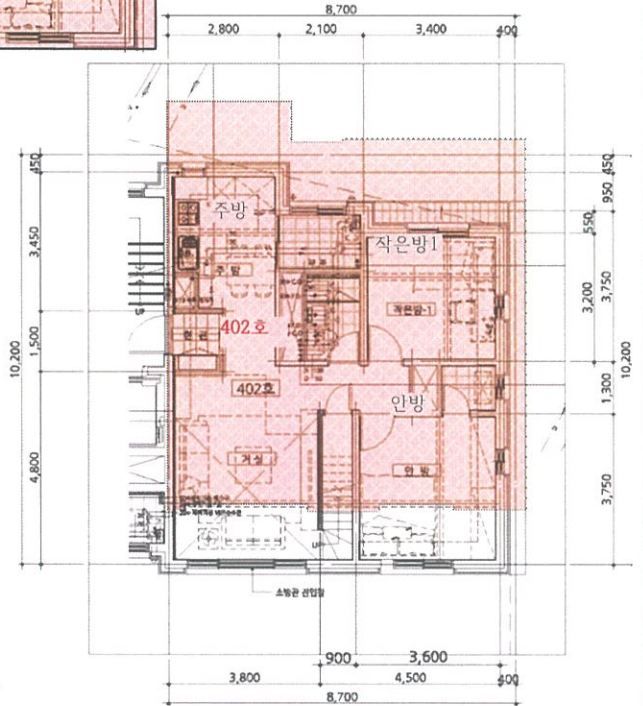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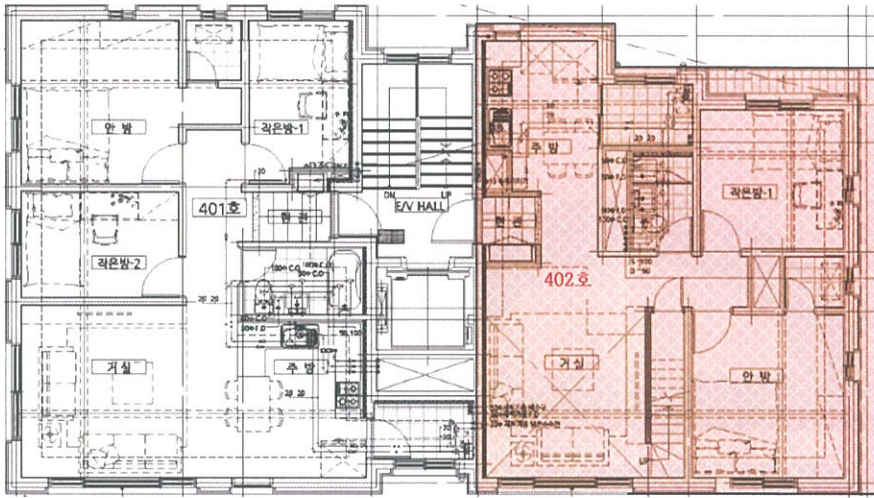


# 건물개황도



S = NO SCALE

소재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32-77외 나너울카운티 제226동 제402호
-----	---



226동 402호  
층별 및 내부구조도

## 임대내역

임대부분	상호명	임차인	임대내역		방개수	비고
			임대차보증금(원)	월임대료(원)		
			미상			
합계						

#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



본건 주변 전경

# 사 진 용 지



본건 주변 전경



본건 주변 전경

# 사 진 용 지



본건 주변 전경



본건 제4층 제402호 전경



본건 주변 전경



본건 주변 전경